

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(제305조제2항 관련)

구분	기준
1. 법인성격	항공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
2. 전문인력	<p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이상을 확보할 것</p> <p>가. 법 제35조제8호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</p> <p>나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항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받은 사람</p> <p>다. 항공기술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항공기등,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설계·제작·정비 또는 품질보증 또는 안전성인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</p>
3. 시설 및 장비	<p>가.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등을 위한 이륙 및 착륙 시설(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</p> <p>나. 안전성인증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무실 및 사무기기</p> <p>다. 초경량비행장치와 관련된 기술자료실</p> <p>라.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의실</p>